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조건부 등록 절차 시행을 위한 제출 서류 규정(안 제8조의2)
- 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 설정(안 제8조의3)
- 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지급액 규정(안 제16조)
- 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서 일부 항목 변경(안 서식 제6호의2, 제6호의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23. ~ 5. 8.)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별첨 참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갱신·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갱신하려”를 “갱신 또는 중요한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등록·갱신등록신청서”를 각각 “등록·갱신·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갱신하려”를 “갱신 또는 중요한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로, “등록·갱신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를 “등록·갱신·변경신청서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노점상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의 서류(노점상인의 경우 제외)

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다. 표준재무제표증명

③ 신청 상인은 개별가맹점 등록·갱신·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내·외부 현장 사진(외부 사진의 경우 점포명 또는 상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2.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점 상인의 경우)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영 제9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업종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상인에게 품목별 매입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 법 제26조의4제6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관리비 등 공과금 고지서 중 1종 이상

2.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종 이상

가. 사업자등록증명원(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법 제26조의 13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
2.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3.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금 등)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70조의3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재신고인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인 경우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3항관련)

1. 일반 원칙

- 가.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의 가맹취소,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나. 포상금은 신고자 1인 1회 최대 1,000만원, 1년 최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20만원 이하 소액 포상의 경우 연간 최대 3회로 제한한다.
- 다. 제2호가목에 따른 포상금은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 마. 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포상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한다.
- 바.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사. 공동신고는 대표자에게,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선신고자에게 지급한다.

2.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 지급 기준

- 가. 상품권 유통액에 따른 차등 지급

부 정 행 위	지 급 액	지 급 시 기
1)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나목을 위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피신고자가 해당 부정행위를 통해 환전(대행)한 온누리상품권면금액에 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당시에 적용한 할인율을 곱한금액의 30%	과징금 부과 후
2)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 등 유통·사용한 경우		
3)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하		과태료 부과 후

는 경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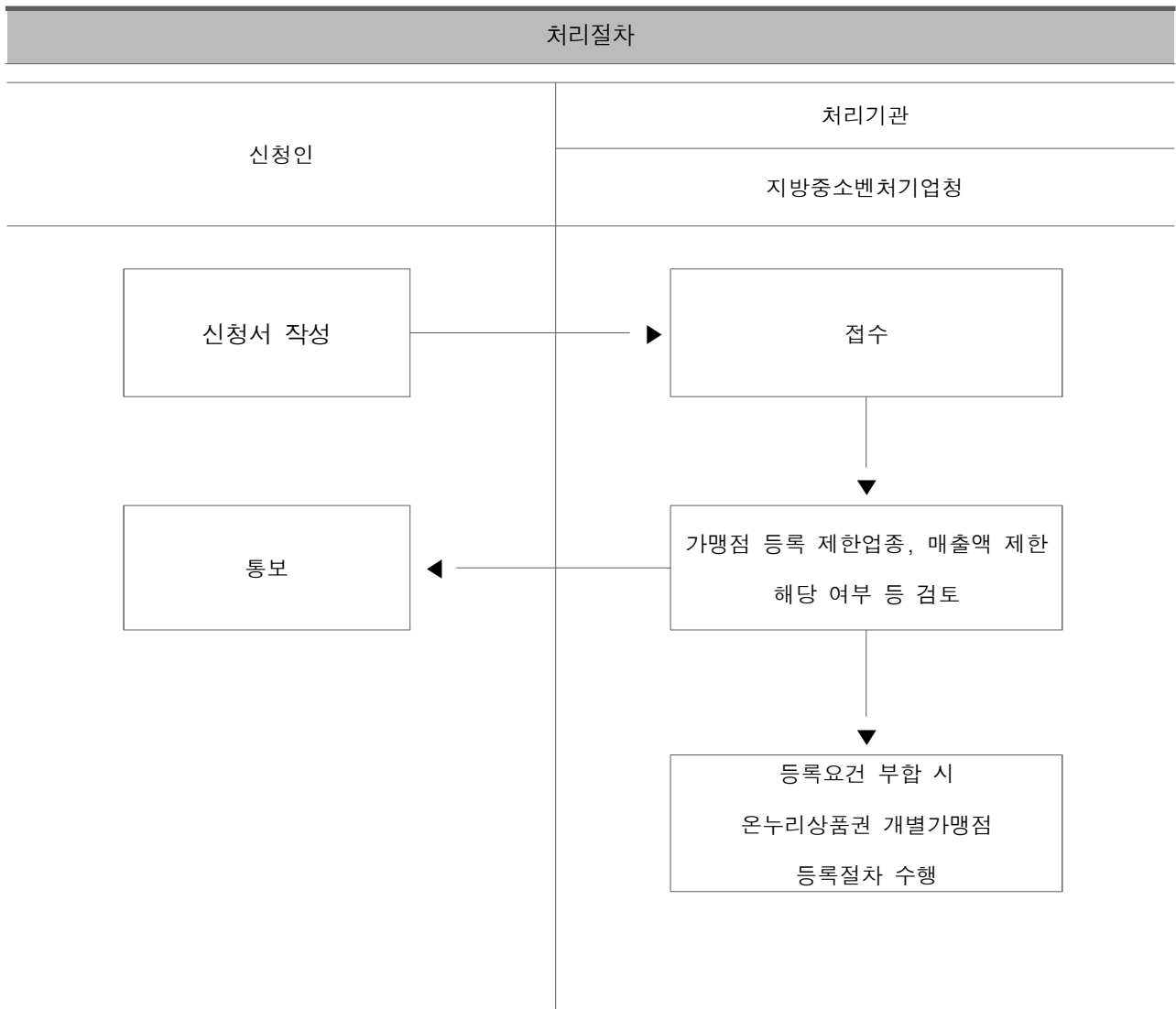
나. 정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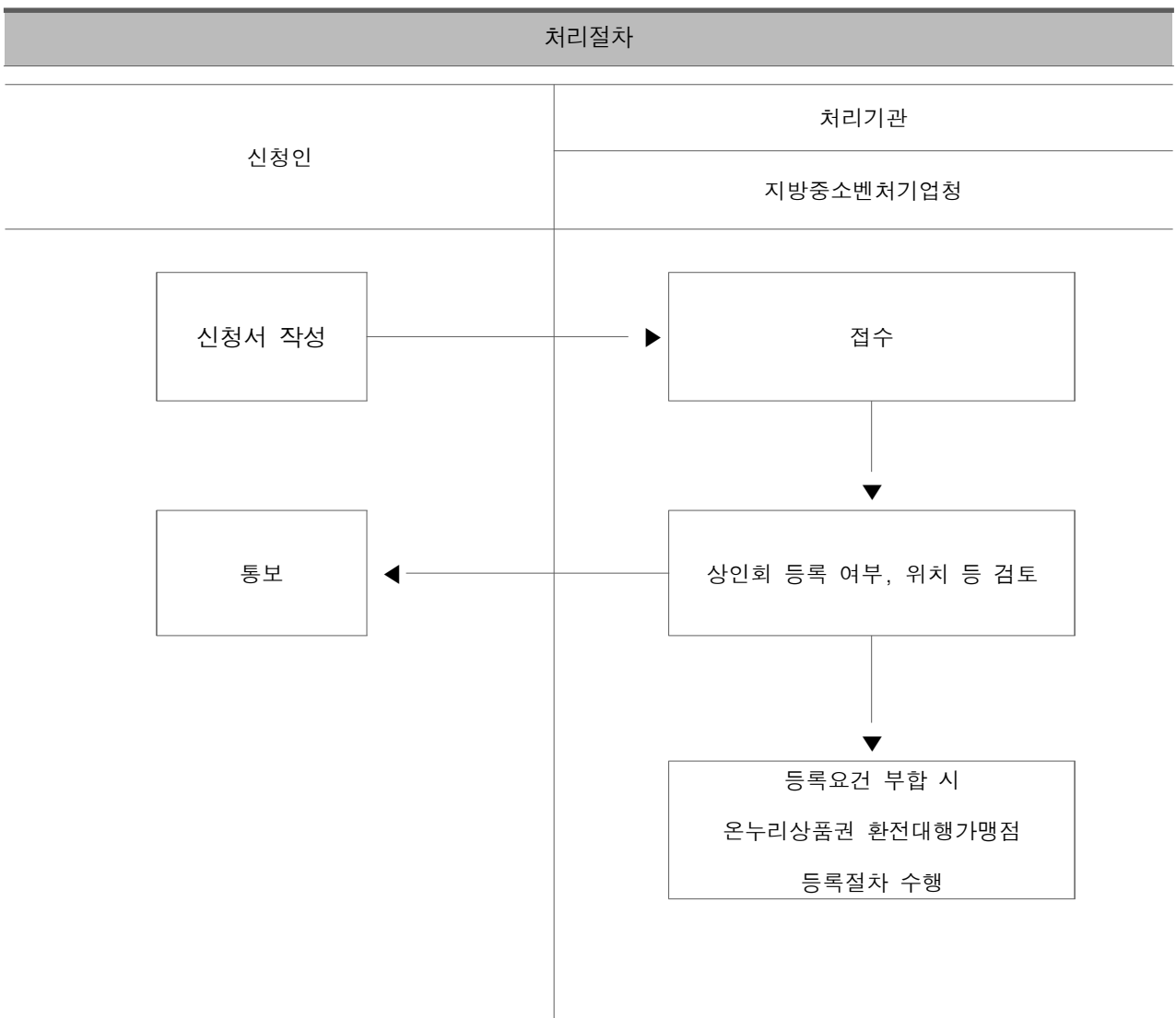
부 정 행 위	지 급 액	지 급 시 기
1)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0만원	과태료 부과 후
2)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3)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4)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전 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5) 법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후
6) 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7) 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대하여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후
8) 법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보관·판매·회수·환전을 수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후
9)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5만원	과태료 부과 후
10)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대가로 지급한 경우		
11)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소비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		위반행위 확인 후

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12) 법 제2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거나 직접 환전한 경우, 또는 등록된 가맹점이 아닌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3) 제16조제1항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3. 비고

- 가. 정확한 신고 내용 없이 단순 온라인 게시글 캡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신고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가맹점이 수취한 사실을 증명해야 지급 가능하다,
- 나.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며, 기타소득세를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u>별표와 같다.</u>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 ----- ----- ----- ----- <u>별표 1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 가맹점 <u>등록·갱신등록신청서</u> 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갱신·변경) ① ----- ----- ----- <u>갱신 또는 중요한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u> ----- ---- <u>등록·갱신·변경신청서</u> ----- ----- -----.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 가맹점 <u>등록·갱신등록신청서</u> 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노점상인일 때</u> 에는 <u>주민등록표 등본</u> 을 확인하	② ----- ----- ---- <u>등록·갱신·변경신청서</u> ----- ----- ----- ----- <u>다음</u> <u>각 호의 서류를</u> -----. <u><단서 삭제></u>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 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업자등록증(노점상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의 서류(노점상인의 경우 제외)

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다. 표준재무제표증명

③ 신청 상인은 개별가맹점 등록·갱신·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내·외부 현장 사진(외부 사진의 경우 점포명 또는 상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2.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점 상인의 경우)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영 제9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업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
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조직
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
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
갱신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
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
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
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신 설>

종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신청 상인에게 품목별 매입
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⑤ -----

----- 갱신 또는 중요한 등
록 정보를 변경하려-----
----- 등록·갱
신·변경신청서를 -----

--.

⑥ 법 제26조의4제6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전기료, 수도
료, 가스비, 관리비 등 공과금
고지서 중 1종 이상
2.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
류 중 1종 이상

<신 설>

<신 설>

<신 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
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는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
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
다.

제8조의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법
제26조의13제3항에 따른 적정
성 검토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
2.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액
3.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항

제16조(포상금 등) ① 법 제70조
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중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
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

를 한 자”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
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은 법 제70조의3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
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람
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
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재
신고인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공

<u>제16조</u> (생략)	<u>무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 인 경우</u> <u>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를 환수할 수 있다.</u> <u>제17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
-------------------------	---